

#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및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 and Policy Analysis of Library Related to Medical Field

신 영 지(Youngji Shin)\*

노 영 희(Younghee Noh)\*\*

### < 목 차 >

I. 서론	2. 의학도서관의 개념
II. 이론적 배경	3. 시사점
1.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정책	V.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 분석
2.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설치 현황	VI.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법적 기준 분석
3. 선행연구	1. 국내 병원도서관의 기준
III. 연구설계 및 방법론	2. 국외 병원도서관의 기준
1. 연구방법	3.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기준 분석의 시사점
2. 연구질문	VII. 논의
IV.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분석	VIII. 결론 및 제언
1. 병원도서관의 개념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을 모두 도출하여 각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의 명칭 및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서관 유형 및 관중 구분, 관련된 법적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의료분야 도서관 간의 유형 및 관계성에 대해 종합정리하였다. 둘째, 현재 부재한 병원도서관의 기준을 국내외 연구 및 기준들을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병원급 이상의 공립병원에 우선적으로 병원도서관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병원도서관, 의학도서관, 환자도서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도서관

### ABSTRACT

In this study, by extracting all relevant types of libraries in the medical field and analyzing their concepts, the research was to clearly define the names and concepts of libraries related to the medical field being mixed and used, to identify types of library, and to draw related legal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libraries in the medical field were organized and the types and relationships between libraries in the medical field were summarized. Second, criteria for currently absent hospital libraries are presented based on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and standards. Third, In order to revitalize libraries related to medical field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libraries related to medical fields. Also, It proposed that public hospitals above the hospital level be made mandatory to set up hospital libraries first through national policy and expand services for patients and careers.

Keywords: Hospital library, Medical library, Patient library, Medical institution, Library of medical institution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gee910125@gmail.com)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8년 11월 10일 •최초심사: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06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237-263,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237]

## I. 서론

오늘날 의료기관들은 진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병원 의료의 질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의사 및 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관들도 고객중심의 경영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임성관 2015). 일반적으로 의료 기관은 첫째, 의료 지식의 향상을 위한 연구, 둘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지식의 응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셋째,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중 보건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공중 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공중 계몽, 넷째,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로 돌아가 그들이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Johnson 1969). 이 목적에 근거해서 볼 때 병원 내 도서관은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일반인 등의 진료·교육·연구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구비하여 의료진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의무가 있다.

최근 의료계는 환자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발 맞추어 국내 의료 분야 관련 도서관들도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의료진 및 전문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업무만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의하면 병원도서관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병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유형의 하나로 「도서관법」에 의해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에 장서 및 시설, 사서배치 등의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한국도서관연감 및 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도 그 현황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체계적인 도서관서비스가 부재하며, 병원도서관의 시설·자료 등의 기준 및 현황조사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추진 실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병원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란 단어가 의사 및 의료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 및 그 보호자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과 의사 및 의료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명칭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병원 내에 설치된 도서관을 병원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조찬식, 한혜영 2005; 조찬식 2006; 노동조, 김정아 2010; 임성관 2015; 장혜란, 김정아 2017), 한국의학도서관

협회에서도 회원 구분 시 병원 내 도서관을 병원도서관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을 모두 도출하여, 각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의 명칭 및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유형 및 관중 구분, 관련한 법적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정책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과 관련한 정책과 그 외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문화비전 2030, SOC 등 관련 정책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정책을 볼 수 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이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 하에 7개의 추진전략과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중 의료분야 도서관 관련 정책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강화’에서는 1)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과 2)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라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으로는 시설 및 자료기준과 서비스 운영 현황 기초 통계자료 조사, 병원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병원도서관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로는 공공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한 자료 및 독서지원서비스 개선,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병원 특성별 역할 분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배치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병원도서관 관련 과제의 추진한 실적은 없었으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8), 병원도서관 외에 교도서도서관 및 병영도서관은 서비스 강화에 관한 추진실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병원도서관의 경우 모기관인 병원이 공공영역 보다는 사적영역이라는 점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비전 2030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문화비전 2030은 3대 가치와 9대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37개 주요 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문화권 실현을 위한 여가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제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우리 동네 특화 도서관’ 도입에 대한 과제가 있으며,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한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생활형 SOC 정책의 하나로 2019년 공공·작은도서관 조성예산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작은도서관은 시·군·구마다 1개관씩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노후된 공공도서관 107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화형 작은 도서관을 243개 대폭 늘리며,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노후화된 도서관이 북카페 같은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고 지역수요에 맞는 특성 있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책과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표 1〉 의료분야 도서관 관련 정책 및 도서관 관련 정책

구분	내용	
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	-시설 및 자료기준과 서비스 운영 현황 기초 통계자료 조사
		-병원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병원도서관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공공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한 자료 및 독서지원서비스 개선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문화비전 2030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우리동네 특화 도서관’ 도입	
	-생활 SOC 강조에 따라 노후된 공공도서관 107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화형 작은 도서관을 243개 대폭 증가 예정	
생활 SOC 정책	-폐쇄적이고 노후화된 도서관이 북카페 같은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변모	
	-지역수요에 맞는 특성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 예정	

도서관 관련 정책과 의료분야 도서관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비전 2030 발표 및 생활 SOC가 강조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도서관의 도입과 노후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추진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2.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설치 현황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중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관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기준으로 파악되는 의학도서관으로 총 155개이며, 의학도서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과대학도서관 52개, 병원 내 도서관 84개, 연구소 도서관 13개, 제약회사 도서관 6개로 나타났다.

〈표 2〉 의학도서관 설치 현황

구분	의과대학	병원	연구소	제약회사	계
2018년 기준	52	84	13	6	155

\*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연락하여 확인(2018.10.04.)

병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반면, 병원도서관 외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은 한국도서관연감, 도서관통계시스템 등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병원도서관 현황을 찾는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병원도서관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현대해상,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및 기업, 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내 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도서관들은 병원 내 도서관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들이 독서를 통한 휴식 및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서적 등 장서를 기증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3〉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사례

구분	지원기관	기간	내용
책읽는 병원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10-2011	● 강남세브란스병원 별관 로비, 서울대병원 본원 및 암병원 개관하였으며, 다종다량의 장서 구비
도서관이 있는 병원	본지, 동국계약	2010-2012	● 현책 기증 캠페인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기증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작은 공간 마련
징검다리 도서관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2012-2013	● 전국 중소병원의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내 도서관 20개 설립
마음센터	현대해상,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2015~	●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공간 제공
아름다운 도서관	신한카드	2015~	● 2015년부터는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독서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 진행 ●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복지관, 어린이 병원 등에 맞춤형 아름다운 도서관 지원
꿈자람 책방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8.5	●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 안정과 함께 치료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독서를 위한 전용 공간과 함께 테이블 의자, 책장 등이 마련

##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병원도서관은 통계상으로 설치 현황을 파악 할 수 없었으며, 의학도서관도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기준으로 파악된 현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었다. 병원도서관 현황이 통계상으로 부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병원은 공적영역이기보다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높은 점, 병원도서관이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법적 기준이 부재한 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이 거의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되더라도 시민단체 및 재단, 기업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병원도서관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구분하고,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선행연구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의학도서관,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등을 대상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중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의학도서관 관련 연구로 의학도서관의 장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의학도서관의 장서와 관련한 연구로는 학술잡지의 공동이용 및 공동보존에 대한 연구(송준용 2000; 송준용 2002; 장혜란, 김정아 2013)가 주를 이루었으며, 의학도서관의 장서 구성 및 장서관리정책 등의 연구(남태우, 김은주 2010; 김에스더, 남영준 2015)도 진행되었다.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독서치료 서비스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윤영대(1991)는 의학도서관의 임상 의학 정보 봉사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에 대한 보건 정보 봉사를 소개하였으며, 홍기선(2005)은 병원도서관 내에 환자도서관 설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건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영희(2014)는 공공도서관과 의학도서관이 건강 및 의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임성관(2015)은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 치료 서비스 개발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의학도서관 사이트에 나타난 정보서비스 및 콘텐츠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의학도서관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조찬식, 한혜영 2005a; 조찬식, 한혜영 2005b; 노동조, 김정아 2010), 의학도서관의 경영자원에 관한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제시한 연구(조찬식 2006),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직문 소직에 관한 연구(장혜란, 김정아 2017) 등도 진행되었다.

둘째, 병원도서관에 대한 연구로 이미경(1987)은 환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자에 대한 병원도서관 봉사 실태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도서관 봉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홍재현(1989)은 일본의 입원 환자 도서 봉사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과제로 환자도서관의 설치, 소장 장서의 충실, 시각 장애자에 대한 봉사, 병원 예산에 의한 관리 운영, 일반인을 위한 건강 관리에 관한 코너의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문숙(1997)은 병원도서관의 정보 봉사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서의 의사 결정권, 도서관 조직 규모, 사서의 전문성 등이 정보 봉사 활성화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요인들보다 먼저 병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병원 경영층의 인식과 법적, 제도적인 개선, 전문 사서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환자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수행한 김민희 등(2001)은 서울의 500병상 이상의 병원 중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환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병원 2개를 대상으로 그 운영 실태와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병원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한 양질의 정보 제공,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 번거롭지 않은 대출 방법, 온라인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전문사서 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의학도서관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학도서관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최신성이 중요하고 타 관중 도서관의 비해 학술지의 이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에서 학술잡지 공동 이용 및 인쇄본 학술지의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정보의 전자화로 웹페이지 상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의학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환자의 알 권리와 함께 소비자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도서관에 대한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설치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명칭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서관법」에서 병원도서관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함에 따라 병원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을 환자와 보호자로만 한정하여 환자도서관이라는 명칭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현재 병원도서관 명칭보다는 환자도서관으로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나타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또한 병원 내 전문가(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인턴 및 레지던트 등)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명칭은 의학도서관, 의학정보실, 의학자료실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을 모두 도출하여, 각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의 명칭 및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유형 및 관중 구분, 관련한 법적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및 유형, 법적 기준 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선행연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의학도서관,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등에 대한 논문,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연구자별 각 도서관의 개념 정의 및 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으로 의학도서관, 병원도서관 등의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도서관연감, 공공도서관통계조사 결과보고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외에 홈페이지 및 뉴스기사 등을 통해 관련 도서관 운영 사례 등을 수집하였다. 관련 정책의 경우,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문화비전 2030, SOC 정책 등을 통해 도서관 및 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외 관련 법적 기준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의료법」 등의 법률을 분석하였으며,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한국도서관 기준과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도 조사·분석하였다. 국외의 기준으로는 IFLA의 병원도서관 지침 및 미국의학도서관협회 병원도서관 기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과 유형, 법적 기준 등을 재정립하고,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연구질문

현재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에 대한 명칭 및 개념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별이나, 기관별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관련한 법적 기준 등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을 모두 도출하여, 각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의 명칭 및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서관 유형 및 관중 구분, 관련한 법적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논의 될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RQ 1: 병원도서관과 환자도서관, 의학도서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RQ 2: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RQ 3: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위의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이론적 선행연구와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현황 및



사례, 관련 정책 등을 총체적으로 수집·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및 유형, 법적 기준 등을 재정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논의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V.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분석

의료분야와 관련한 도서관의 개념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의료기관에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이에 속한다.

〈의료법〉(시행 2018.9.28, 법률 제15540호)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선행연구 및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을 도출한 결과,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도서관, 병원 내 의학도서관, 관련 분야 연구소 도서관, 제약회사도서관, 학회도서관 등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을 병원도서관과, 의학도서관, 환자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조사·분석하였다.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과, 관련 분야 연구소 도서관, 제약회사도서관 등은 의학도서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념은 의학도서관에 포함시켰다.

### 1. 병원도서관의 개념

병원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도서관법」(시행 2018.03.13, 법률 제15167호) 제2조(정의) 4항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에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 〈도서관법〉(시행 2018.3.13, 법률 제15167호) 제2조(정의) 4항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라. 육군, 해,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2007)는 병원도서관의 기준을 “IFLA에서 정의한 바대로 보건정보자료와 더불어 여가용 독서컬렉션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환자를 위한 도서관(a library for patients)’으로 한정함으로써 의사 및 의료분야 종사자를 주요한 이용자로 하는 의학도서관(medical library)과 구별하도록 하였으며,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산하 병원 및 공공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Hospital & Institution Libraries, AHIL)에서는 환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병원도서관의 의무로 규정

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2013)에서 제시한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병원(환자)도서관은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건강 및 질환에 관한 정보·의료, 여가·오락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명칭을 병원(환자)도서관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서비스 대상자가 환자나 보호자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도서관이란 명칭보다 환자도서관이 더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용어가 병원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병원 뒤에 환자를 병기한 병원(환자)도서관으로 표기하였다.

반면, 다른 개념으로 미국 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MLA)에서는 병원도서관을 병원 의료진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서 및 봉사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라고 의사용 도서관으로 규정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문헌정보학 용어집에서는 병원도서관을 '의료진, 준의료인, 간호사, 연구원, 행정가, 교육담당 직원 또는 환자들의 정보요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병원에서 설립, 유지하는 도서관'이라고 하여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도서관으로 규정하였다(ALA 1983).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외에서는 환자도서관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며(이종복 2006),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병원에서는 의학도서관과 간호도서관외에 환자도서관을 두어 일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건정보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환자나 그 가족에게 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59년에 전국간호연맹(National League for Nursing)에 환자 권리선언(Patient's Bill of Rights)이 제정·발표되었고, 그 후 1975년에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에서 환자 권리선언이 재 공식화되면서 환자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진단과 치료와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병원에 환자도서관을 설치하고 환자의 알권리에 대응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환자도서관은 환자교육자료센터, 보건교육도서관 또는 환자도서관(Patient Education Resources Center, Health Education Library, Patient Library) 등이라 칭한다. 환자도서관은 대개 병원도서관 내에 의사들의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입문을 별도로 하여 서가로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설치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1964년에 나고야시립도서관이 시초로 입원 환자에게 독서물을 제공하는 도서관 봉사를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악성질환의 경우 환자에게 그의 병명을 알려주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물 제공 외에는 별다른 봉사가 없다. 1984년에 일본 환자도서관연구회를 조직하고 지치이과대학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공공도서관의 역할로 시작하면서 서서히 의학도서관과의 관계를 깊게 해 나갈 방침으로 시작되었다. 즉 처음에는 환자에게 독서물 제공 정도로 시작하나 최후의 목적은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홍기선 2004).

이와 같이 병원도서관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연구자 및 기관에 따라 병원도서관은 크게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유형의 병원도서관, 병원 내 전문가(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등)를 위한 전문도서관 유형의 병원도서관, 의료진과 환자

모두 포함하는 병원도서관 등 3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병원도서관의 개념이 해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환자도서관(Patient Library)의 개념과 유사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2. 의학도서관의 개념

의학도서관은 현재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중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의학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다. 이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의학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학도서관의 개념을 모 기관의 연구자와 직원을 위한 의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보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보건과학도서관(Health Sciences Library)이라고도 칭하며 병의원, 의학교, 의학연구소 등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Lindberg 2005; 조찬식, 한혜영 2005; 이연주 2009; 남태우, 김은주 2010). 비슷한 의미로 윤봉자(1996)는 의학도서관은 주제 전문도서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의학도서관, 보건과학도서관, 생의학도서관, 생명과학도서관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의학, 치과학, 간호학 및 약학과 같은 보건과학 분야에서의 학생, 교수, 의사 및 연구자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노동조와 김정아(2010)는 의학도서관을 의대교수, 임상 의사, 수련의, 의과대학생,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주 이용자 층으로 하여 의학분야의 연구, 교육 및 임상 업무, 학업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정의하여,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의 의학도서관에 중점을 두어 정의하였다.

의학도서관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의과대학, 병원, 의료분야 연구소 등을 모기관으로 두며, 의학, 치과학, 간호학 및 약학과 같은 보건과학 분야의 의사, 교수, 의과대학생,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의학도서관은 모기관을 두고 있다는 점, 보건과학이라는 특정주제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전문도서관이다.

## 3. 시사점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으로 병원도서관, 의학도서관, 환자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분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도서관 명칭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도서관법」에서 병원도서관 개념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란 단어가 의사 및 의료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 및 그 보호자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의미가 있기에 생겨나는 혼동과 혼란이

있다. 이에 1) 병원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지금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개념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진 및 전문인을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의 명칭을 새로 규정하여 명확한 개념을 구분하는 것, 2) 병원 내에 있는 설립된 도서관을 통틀어 병원도서관이라고 하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과, 의료진 및 전문인을 위한 도서관의 명칭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3) 대상에 따른 명칭 구분 없이 병원 내 도서관을 병원도서관이라고 하며,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및 전문인 등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의학도서관의 명칭 구분 및 통일이 필요하다. 의학도서관은 개념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나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속해 있는 기관 및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있다. 의학도서관의 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구분하고 있는 의과대학, 병원, 연구소, 제약회사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학도서관 명칭은 여러 의학 관련 전문도서관의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의 명칭으로만 불리고 있어서 의학도서관을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병원 내의 의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의학도서관, 의학정보실 등의 명칭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외 연구소 및 제약회사 내 의학도서관도 도서관, 자료정보실, 지식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각 모체기관의 인식과 입장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명칭 혼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와 이용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의학도서관 명칭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 분석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학도서관 내에서만 유형 구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학도서관이 하나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속해 있는 기관이나 이용자 성격 또는 지원을 받는 곳에 따라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학도서관의 유형은 연구자 및 기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먼저 Langner(1974)는 의학도서관의 유형을 크게 1) 정부산하의 의학도서관 및 의학관계 연구소의 도서관인 정부도서관, 2) 각종 의학협회와 연관된 도서관으로 소속회원들에게 전문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세워진 학회 도서관, 3) 의학, 치과학, 간호학, 약학의 개개학교도서관으로 각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에 봉사하는 전문직학교 도서관과 연구소도서관, 4) 병원도서관, 5) 의학과 관련된 산업체의 도서관인 제약회사 도서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의학도서관을 소속기관이나 이용자의 성격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곳에 따라 크게 1) 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 및 보건의료분야의 교수와 학생을 위한 의과대

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 2)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모기관의 의료진을 위한 병원도서관, 3) 정부산하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소도서관, 4) 제약회사처럼 의학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제약회사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윤봉자(1996)는 의학도서관을 의과대학, 병의원, 각종 관련 연구소, 협회, 정부기관, 제약회사들이 의해서 관리·지원된다고 정의하였으며, 조화순(2011)과 임성관(2015)은 의학도서관을 크게 의학도서관은 크게 대학도서관, 병원도서관, 연구소도서관, 기타의 도서관 등 4개로 구분하였다.

키야마 야스히코(城山泰彦, 일본의 준텐도대학도서관順天堂大学図書館, 일본의학도서관협회의 멤버)는 의학도서관의 유형을 교육·진료·연수의 장인 의학부, 치학부, 약학부, 의료간호학부, 의료기술학부 등의 대학도서관, 간호·의료기술계 등의 단기대학도서관, 전문학교도서관, 진료와 연수의 장인 병원도서관, 연구소의 도서관, 또한 병원 내의 환자도서관서비스와 환자도서관을 포함하여 ‘의학도서관’으로 다루었다(안찬수 2012).

〈표 4〉 연구자별 의학도서관 유형 구분

유형 구분	Langner (1974)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조화순(2011); 임성관(2015)	윤봉자 (1996)	城山泰彦 (2008)	계
정부도서관	○			○		2
학회도서관	○					1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 대학 도서관		○	○	○	○	4
전문직학교도서관	○				○	2
단기대학도서관					○	1
연구소도서관	○	○	○	○	○	5
병원도서관(전문)	○	○	○	○	○	5
환자도서관					○	1
제약회사도서관	○	○		○		3
협회				○		1
기타 도서관			○			1

의학도서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의학도서관의 유형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회원 구분 시 사용하고 있는 유형인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 병원도서관, 연구소도서관, 제약회사도서관으로 일반화되어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유형 구분도 명확한 기준에 따른 구분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사용해 오던 구분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설립주체에 따른, 서비스 대상에 따른, 관중에 따른 유형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Ⅵ.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법적 기준 분석

### 1. 국내 병원도서관의 기준

병원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도서관 시설, 장서, 직원 배치 기준적용을 위해 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병원도서관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07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병원도서관 기준과, 2013년에 발간한 「한국도서관기준」에 병원도서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강제된 구속력은 없지만 도서관 운영에 기본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서로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에서의 병원도서관 기준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에서의 병원도서관 기준은 ‘IFLA 병원 환자 및 장기치료시설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지침’에 준하여 제안하였다(곽동철 외 2007). 기존 병원도서관의 관련 기준에서는 봉사 대상 인구를 입원 중인 환자로 구분하였으나, 그 수는 가변적이므로 병상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병원도서관의 시설의 경우, 총면적 계산에는 열람 및 학습구역 각 좌석 당 최소면적은 3.3㎡, 직원 사무 공간의 최소면적은 12.0㎡, 서가 사이 통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460cm 이상 확보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다. 장서의 경우, 책은 인쇄형만이 아니라 비인쇄형 포맷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일정비율은 비인쇄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환자를 위한 장서를 적어도 2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정기간행물은 신문을 포함하고, 현재 구독중인 간행물의 종수로 규정하며, 자료의 이관 및 폐기할 경우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준한다. 직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사서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장서 및 봉사 대상자수에 따라 증원해야

〈표 5〉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의 병원도서관 기준

구분		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시설	자료이용면적	66 이상	99 이상	132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좌석수(병상수)	5%	5%	5%	5%	5%
	총면적	158 이상	235 이상	420 이상	500 이상	580 이상
장서	최소 장서(병상당)	8책	7책	6책	5책	5책
	연간 최소증가(병상당)	0.5책	0.5책	0.5책	0.5책	0.5책
	정기간행물(기본)	30종	30종	30종	35종	65종
직원	사서직원(명)	1인	1인	1인	1인	1인
	보조직원(명)	-	1인	1인	2인	2인

한다. 또한 병원도서관의 사서직원은 (사)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의학전문사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 배치한다.

나. 한국도서관기준의 병원(환자)도서관 기준

병원(환자)도서관 기준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서관 개념에 준하여, 사명과 목적, 조직 및 인적자원, 자료, 시설, 예산, 이용자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병원(환자)도서관은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건강 및 질환에 관한 정보·의료, 여가·오락자료 등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조직 및 인력은 이용자 요구 및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대처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병원 규모를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료는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을 기술한 의학 및 건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 정보와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정서적 함양과 지식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의 경우 위치는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종류의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또한 각종 독서 보조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을 충분히 확보·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대출·열람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표 6〉 한국도서관기준 중 병원(환자)도서관 기준

구분	내용						
조직 및 인력	구분	기본인력		비고			
	관장	1명		병상 1,000개 미만일 경우 사서업무 겸직			
	사서	1명		-			
	사서보조	1명		-			
자료	병상 수 (서비스 대상)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도서	기본장서(권)	8책	7책	6책	5책	5책
		연간 증자책수(권)	0.5책	0.5책	0.5책	0.5책	0.5책
	연속 간행물	기본장서(종)	30종	30종	30종	35종	65종
시설	[병원(환자)도서관의 최소 면적기준]						
	100-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66	99	132	165	198		



2. 국외 병원도서관의 기준

가. 미국의학도서관협회 병원도서관 기준

미국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MLA)는 2002년 ‘병원도서관 기준(Standards for Hospital Libraries)’(이하 MLA 기준이라고 함)를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병원행정가, 사서 및 인증기관들을 위해 병원이 지식기반 정보(knowledge-based information, KBI)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갖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작성되었고, 도서관은 자체의 예산을 갖고 있는 독립 부서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MLA 기준’은 지식기반 정보(KBI)를 “기관 외부에서 생산된, 최신의 전문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KBI는 의료전문가들이 소양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고, 임상, 경영, 및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환자에 대한 위험(risk)을 줄이기 위한 성능 개선과 활동을 지원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연구관련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돕는 시스템, 자원과 서비스를 말한다. MLA 기준은 크게 대상, 시설, 장서, 직원 기준으로 구분되어 지며, 각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MLA 병원도서관 기준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직원(clinical staff)</li> <li>그 외의학 및 기타 프로그램의 레지던트와 인턴, 간호직원, 행정 및 관리직원, 연구직원, 유관 보건직원, 외부 소개 직원, 연관된 프로그램의 학생, 환자와 그 가족, 해당되는 기타 그룹</li> </ul>
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관 직원, 소장 컬렉션, PC 및/혹은 기타 정보기술 하드웨어, 적절한 수의 이용자 좌석을 수용할 만큼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li> <li>또한 적어도 전문 도서관 직원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여 도서관 직원들 간, 혹은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li> </ul>
장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쇄 혹은 전자형태로 된 저널, 텍스트, 문헌 및 데이터베이스</li> <li>벤치마크, 우수실무사례, 지침, 의견발전보고서</li> <li>연구보고서, 품질 평가된 인터넷 자원</li> </ul>
직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BI 시스템과 서비스는 “자격이 있는 사서(qualified librarian)”가 관장</li> <li>AHIP(Academy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회원이 선호된다고 명시</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직원 배치 공식]                      전체 기관 전임직원수 / 700 = 최소 도서관 전임직원수                      * 전체 기관 전임직원: 도서관이 봉사하는 기관의 직원과 더불어 모든 현직 의료 직원, 그리고 이들이 기술적으로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는가에 무관하게 서비스 계약 하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포함                      * 최소 도서관 전임직원: 기본적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반영</p> </div>

나. IFLA 병원도서관 지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2000년에 ‘IFLA 병원 환자 및 장기치료시설의 노인과 장애인 위한 도서관 지침(IFLA 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the Elderly and Disabl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이하 IFLA 지침이라 함)’을 선포하였다. IFLA 지침에서 병원도서관은 환자를 위한 도서관(a library for patients)을 의미하며, 보건정보자료와 더불어, 여가용 독서컬렉션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IFLA 지침은 크게 시설, 장서, 직원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의 경우, 세부적으로 위치와 공간의 활용, 수용능력, 공간의 배치, 배가, 장비 등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장서의 경우, 어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상 이용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장서 규모는 병원과 장기치료시설로 구분하며, 병원의 경우 병상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직원의 경우, 하나 이상의 전문사서와 준전문직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IFLA 병원도서관 기준

구분	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의 중심부, 즉 환자병동에서 오고가기에, 또한 외래환자, 직원, 방문객의 흐름에서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구역에 위치</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수용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은 개인과 집단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단기 입원 병원: 입원환자 인구의 5-10%(10%를 선호)에 대한 좌석을 제공해야 한다.</li> <li>- 장기 치료 시설: 입원환자 인구의 15-20%(20%를 선호)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li> </ul> </div>											
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서 규모는 지역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병상 수를 기준으로 고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3">병원</td> <td>300 병상 이하</td> <td>병상 당 8책</td> </tr> <tr> <td>300-500 병상</td> <td>병상 당 7책</td> </tr> <tr> <td>500 병상 이상</td> <td>병상 당 6책</td> </tr> <tr> <td colspan="2">장기치료시설</td> <td>병상 당 8책</td> </tr> </table>		병원	300 병상 이하	병상 당 8책	300-500 병상	병상 당 7책	500 병상 이상	병상 당 6책	장기치료시설		병상 당 8책
병원	300 병상 이하	병상 당 8책										
	300-500 병상	병상 당 7책										
	500 병상 이상	병상 당 6책										
장기치료시설		병상 당 8책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 이상의 전문사서, 하나 이상의 준전문직(paraprofessionals: library associates)</li> <li>• 기술보조원(technical assistants: 시청각자료, 보조장치 및 컴퓨터의 이용에 능력이 있는 사람)</li> <li>• 사무직원</li> </ul>											

### 3.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기준 분석의 시사점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병원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도서관 시설, 장서, 사서 배치 기준적용을 위해 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병원도서관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도서관기준(2013) 및 기타 연구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서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는 미국의학도서관협회 및 IFLA 등에서 병원도서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병원도서관의 시설, 자

료, 사서직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VII. 논의

### 가.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및 명칭 구분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 병원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도서관법」 제2조(정의) 4항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에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규정에서 서비스 대상을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의미가 유사한 환자도서관과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환자도서관의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내 도서관은 의학도서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학자료실, 의학정보실, 의학도서실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학도서관도 현재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명칭 또한 설립 기관 및 이용 대상 등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여러 유형의 의학도서관을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의 명칭으로만 불리고 있어서 의학도서관을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각 모체기관의 인식과 입장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명칭 혼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와 이용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의학도서관 명칭은 통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병원이란 단어는 의사 및 의료분야 종사자 뿐 만 아니라 환자 및 그 보호자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의미하기 때문에, ‘병원도서관’은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뿐 만 아니라 병원 내의 전문가(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인턴 및 레지던트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 즉, 병원도서관이란,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와 여가, 오락 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인턴 및 레지던트 등) 전문가의 연구, 교육 및 임상 업무, 학업 등을 지원하며 보건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의학도서관은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의료분야 연구소, 제약회사 등을 모기관으로 두며, 보건과학 분야(의학, 치과학, 간호학 및 약학)의 의사, 교수, 의과대학생,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자 등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의학도서관은 소속기관이나 이용 대상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의학전문도서관’이라 통칭하고자 한다(노동조, 김정아 2010). 또한 현재 각 기관에 따라 정보실, 도서실, 정보센터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의학도서관의 명칭을 ‘(기관명) 의학도서관’으로 통일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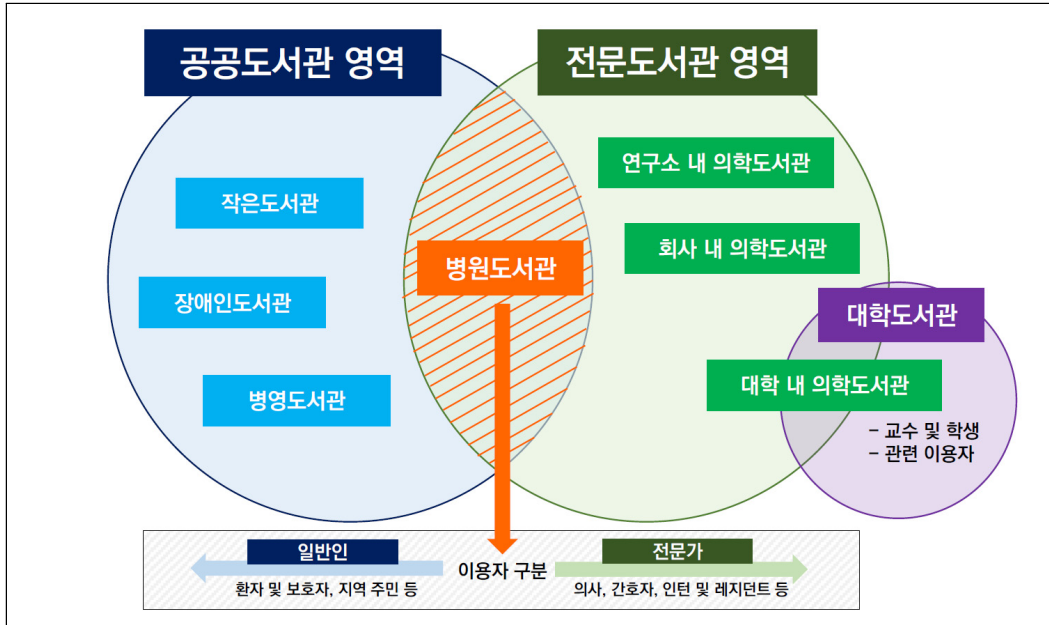
〈표 9〉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개념 정리

구분	병원도서관	의학도서관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연구소 내 의학도서관	제약회사 의학도서관
관종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전문도서관	전문도서관
대상	-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 - 병원 내 전문가(의사, 간호사, 인턴, 의료기사, 레지던트 등)	- 교수 - 학생 - 연구원	- 기관 내 연구원 - 관련 기관 이용자	- 회사 내 연구자 - 관련 기관 이용자
목적	-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와 여가, 오락 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연구, 교육 및 임상 업무, 학업 등을 지원하며 보건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 의학 관련 자료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보존 및 정보 제공 - 의학분야의 연구, 교육 및 임상 업무, 학업 지원		
장서	- 전 분야의 장서(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대상) - 의료 및 건강 관련 장서 - 보건과학 분야 전문서적, 전자저널, 연구보고서, Web DB, SW	- 관련, 전문서적, 전자저널, 연구보고서, Web DB, SW		
서비스 및 프로그램	- 건강정보 및 의료정보 제공 - 독서치료프로그램 - 여가·오락자료 서비스 제공 - 의학 관련 자료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보존 및 정보 제공 - 의학분야의 연구, 교육 및 임상 업무, 학업 지원	- 의학도서관 유형에 따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상의할 수 있음 - 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 교육, 업무 등 지원		

나.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유형 및 관계성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은 설립 주체 및 이용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기도 하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관종도 나뉜다. 이에 의료분야 도서관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지만 전문도서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병원이라는 모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건과학 분야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도서관은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와 여가, 오락 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이자, 전문가의 연구, 교육 및 임상 업무, 학업 등을 지원하며 보건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의 경우, 의학전문도서관의 한 유형이지만 모기관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건과학이라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이다. 이와 같은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관계성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의료분야 도서관의 유형 및 관계도

#### 다.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법적 기준

병원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도서관 시설, 장서, 사서 배치 기준적용을 위해 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병원도서관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원도서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한국도서관기준 및 관련 연구, IFLA, MLA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하여 병원도서관 기준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경우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을 봉사대상 인구(명)를 기준하고 있지만, 병원도서관의 경우 병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병상 수를 기반으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도서관의 시설은 병원의 중심부, 즉 환자병동에서 오고가기에, 또한 외래환자, 직원, 방문객의 흐름에서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구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공간은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 등으로 나누어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공간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과, 전문가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서의 경우,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서의 경우, 병상 수를 기반으로 기준을 삼으며, 전문가를 위한 장서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문도서관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사서배치 기준의 경우, 전체 기관 전임직원 수를 기반으로 하여 최소 도서관 전임직원 수를 고려하며, 이와 함께 병상 수를 기반으로 사서직원 및 보조 직원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병원도서관의 사서는 이용자 대상을 특성

을 고려하여 일반인(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등)과 전문가(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두 이용자층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1명 이상의 전문사서를 배치해야 한다.

<표 10> 「도서관법 시행령」 병원도서관 기준(안)

구분	내용					
시설	• 병원의 중심부, 즉 환자병동에서 오고가기에, 또한 외래환자, 직원, 방문객의 흐름에서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구역에 위치					
	구분	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자료이용면적	66 이상	99 이상	132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좌석수(병상수)	5%	5%	5%	5%	5%
	총면적	158 이상	235 이상	420 이상	500 이상	580 이상
장서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장서 기준]					
	구분	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최소 장서(병상당)	8책	7책	6책	5책	5책
	연간 최소증가(병상당)	0.5책	0.5책	0.5책	0.5책	0.5책
	정기간행물(기본)	30종	30종	30종	35종	65종
[전문가 대상 장서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문도서관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	구분	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사서직원(명)	1인	1인	1인	1인	1인
	보조직원(명)	-	1인	1인	2인	2인
	<b>[직원 배치 공식]</b> 전체 기관 전임직원수 / 700 = 최소 도서관 전임직원수 * 전체 기관 전임직원: 도서관이 봉사하는 기관의 직원과 더불어 모든 현직 의료 직원, 그리고 이들이 기술적으로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는가에 무관하게 서비스 계약 하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포함 * 최소 도서관 전임직원: 기본적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반영					

라.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정책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과 관련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추진된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도서관, 의학도서관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정책으로 병원급 이상의 병원 가운데서도 국립, 도립, 국군으로 공립병원을 우선적으로 병원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병원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나뉘기 때문에 특히 사립병원의 경우 병원도서관을 의무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병원도서관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설, 자료, 사서직원의 기준을 법률적으로 강제화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병원도서관은 의학전문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직원을 위한 병원도서관에 환자나 그 가족을 위한 출입문을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병원도서관의 공간을 할애하여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큰 재정적 투자가 없이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병원도서관은 의학, 보건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이고 환자에 가까운 입지조건과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협력을 받기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병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 V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을 모두 분석하여, 각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의 명칭 및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서관 유형 및 관중 구분, 관련한 법적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을 명확히하였다. 이에 병원도서관은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와 여가, 오락 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인턴 및 레지던트 등) 전문가의 연구, 교육 및 임상 업무, 학업 등을 지원하며 보건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한다. 의학도서관은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의료분야 연구소, 제약회사 등을 모기관으로 두며, 보건과학 분야(의학, 치과학, 간호학 및 약학)의 의사, 교수, 의과대학생,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자 등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둘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을 위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법에 정의되어 있는 병원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자료, 사서직원 배치에 대한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과 관련한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추진실적이 없다. 이에 향후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실태조사가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정책으로 병원급 이상의 병원 가운데서도 국립, 도립, 국군으로 공립병원을 우선적으로 병원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병원도서관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그 서비스 대상을 환자 및 보호자로 확장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현황 및 인식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유형, 서비스 대상, 이용자 서비스, 장서 관리, 인적자원, 시설, 협력사항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병원도서관 및 의학전문도서관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곽동철 외. 2007.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김에스더, 남영준. 2015. 의학도서관의 단행본 장서구성을 위한 이용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261-276.
- 김홍렬. 2012. 전문도서관 기준의 동향과 개정 방향 연구. 『정보관리연구』, 43(1): 1-22.
- 노동조, 김정아. 2010. 의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21(3): 45-56.
- 노영희. 2014. 공공도서관과 의학도서관의 건강정보서비스 제공현황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339-360.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  
[인용 2018. 10. 19].
- 송준용. 2000. 한국의 의학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1(1): 45-66.
- 안찬수. 2012. “책 읽는 병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연원환자도서관을 위한 몇 가지 사회적 제안. 『제5차 도서관정책 포럼』. 2012년 2월 15일.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윤봉자. 1996. 『한국 의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의학신문. 2006. [기고] 환자도서관과 고객정보센터. 『의학신문』. 2월 27일.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741>>.  
[인용 2018. 10. 05].



- 이연주. 2009. 『의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임성관. 2015. 의학도서관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227-255.
- 장혜란, 김정아. 2013. 의학도서관을 위한 인쇄본 학술지 공동보존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3): 249-271.
- 이기봉. 2018. 중앙병원도서관 ‘꿈자람 책방’ 개관. 『제주도민일보』. 5월 29일.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54>>.  
[인용 2018. 10. 17].
- 조찬식, 한혜영. 2005. 웹페이지를 통한 의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실태조사. 『정보관리학회지』, 22(2): 87-101.
- 조화순. 2011.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저널 이용행태와 서비스품질 지각 분석 : K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지영. 2011. “우리 병원도서관이요? 우리동네 도서관 될 거예요”. 『청년의사』. 5월 15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70>>.  
[인용 2018. 10. 18].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홍기선.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ALA.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 Johnson, B. C. 1969. “Services an integrated hospital library can and cannot provide.” *ALA Bulletin*, 63(11): 1554-1559.
- Langner, M. C. 1974. “User and user services in health sciences libraries: 1945-1965.” *In Library Trends*, 23(1): 7-30.

[홈페이지]

-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http://arcon.or.kr/portfolio/950>> [cited 2018. 10. 18].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http://www.clip.go.kr/>> [cited 2018. 10. 1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Chansu. 2012. "How to make a book-reading hospital": Some social proposals for a patient library. *The 5th Library Policy Forum*. 2012. 02. 15.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Chang, Hye Rhan and Jeong A Kim.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Print Journal Preservation Model for the Medical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3): 249-271.
- Cho, Chan-Sik and Hye-Young Han. 2005.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rvice in Webpages of the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2): 87-101.
- Cho, Hwa Sun. 2011. *Analysis of Medical Library Users' Utilization Behavior and Service Quality Perception of Electronic Journals : Based on the survey data of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at 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8. *Library Development Plans: 2017 Implementation Plan Performance*.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Hong, Ki Sun. *A study for activat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Ph. D. diss.,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angmyoung University.
- Kim, Esther and Young Joon Nam. 2015. "A User Study for the Collection Management of a Medical Library: Focused on the Analysis of Circulation Data of the A-Medic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261-276.
- Kim, Hong Ryul. 2012. "Trend Analysis and Revision of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3(1): 1-22.
-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 Library Standards Special Committee. *201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ak Dong-chul et al.. 2007. *Study on the standard for facilities, materials and librarian*

- disposition of libraries*.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Lee Gi Bong. 2018. *Opened 'dream-dream bookstore' of central hospital library*.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54>> [cited 2018. 10. 17].
- Lim, Seong-Gwan. 2015. "A Survey on the Medical Libraries Librarian's of Perception about Bibliotherapy Serv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2): 227-255.
- Noh, Dong-Jo and Jeong-A Kim. 2010. "A Study on the Analysis of Websites Contents in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45-56.
- Noh, Younghee. 2014. "Study Comparing the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Service by Public and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339-360.
- Medical newspaper. 2006. [contribution] *Patient library and customer information center*.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741>> [cited 2018. 10. 05].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ss Releases. 2018. *'A culture with people' Implementation Plan Performance Culture Vision2030 Announcement*.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 [cited 2018. 10. 19].
- Song, Jun-Yong. 2000. "A Study of System Design for public using to Korea Medical Journ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1): 45-66.
- Yoo ji Young. 2011. *"Our hospital library? It will be our neighborhood library."* May 15. *A young doctor*.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70>> [cited 2018. 10. 18].
- Yoon, Bong Ja. 1996. *A Study of the Developing Medical Library Network in Korea*. Ph. D. diss.,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angmyoung University.

